

<의안번호 제2008 - 7호>

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8. 02. 21.
- 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08. 02. 26.

2. 개정이유

현행 조례의 일부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고 비민주적이고 규제적인 의결방식을 개선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연임규정을 수정함(안 제5조)
 - 2회에 한하여 연임 ⇒ 1회에 한하여 연임
- 나. 의결방식을 민주적으로 개선함(안 제7조제3항)
 -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 ⇒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.
- 다.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조항을 정비함(안 제1조, 제2조제3항, 제4조 본문, 제2조제3항제3호, 제4조제3호, 제6조, 제7조제4항)

- 규정에 의한 ⇒ 에 따른
- 각호 ⇒ 각 호
- 기타⇒ 그 밖에
- 각호의 1 ⇒ 각 호의 어느 하나
- 때 ⇒ 경우
- 제1항 내지 제3항⇒ 제1항부터 제3항까지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-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0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(2008. 1. 24 . ~ 2. 12.)결과 : 특기할 사항 없음

라.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흡한 부분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안건으로서
- 금번 조례안 제5조에서 위촉위원의 임기 규정을 2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1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은

- 2005. 3월 집행부에서 당초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계속 연임하는 것을 방지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조례 개정안을 제11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2005. 4. 20일 공포 시행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음.
-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평가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자는 조례의 규정에서 군수가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시 위촉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의 위촉 여부에 대하여는 조례 운영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2회 연임을 1회 연임으로 개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,
- 또한 이번 조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 조례 제2조 (구성)제3항 각호에서 평가위원회 위원의 위촉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
 - 조례의 상위 법령인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1조(시·군·구 부동산평가위원회)제2항의 규정에서 “시·군·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·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,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

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”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평가위원으로 추천한 자 중에서도 군수가 위촉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,

※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제2조(구성)제3항

1.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
2. 변호사, 부동산학 전공교수,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, 한국감정원직원, 감정평가사, 부동산중개업자, 농협직원 등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정통한 자
3.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현행 조례의 규정에서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도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정하여야 함에도 규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,

- 또한 법령에서 당해 시·군·구의 조례에 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“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” 도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조례의 개정안에 포함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의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
6. 참고자료

○ 관련법령 발취

[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]

제51조 (시·군·구부동산평가위원회) ①시·군·구부동산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시·군·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·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,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(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·군·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